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5-01

www.mafra.go.kr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013. 5.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총 목 차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47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51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5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정의) ····· 3 제3조(적용대상) ····· 4	제1조(목적) ····· 3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대상 규모) ····· 4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6 제5조(수급조절 등) ····· 8		제3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절차 등) ··· 8
제3장 계약 및 준수사항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 11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 12 제8조(사육경비의 지급 등) ····· 13 제9조(준수사항) ····· 14	제2조(가산이자의 이율) ····· 14	제4조(계약서의 작성) ····· 12 제5조(준수사항) ····· 14
제4장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 17 제11조(지정신청 등) ····· 18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 19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 20 제5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 21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22 제6장 분쟁조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4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 24 제18조(관할) ····· 25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25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 26 제21조(결격사유) ····· 27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 28		제6조(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 17 제7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연장 절차 등) ··· 18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취소) ····· 20 제9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 28		
제24조(규칙 제정) ····· 30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 30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 32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33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34		
제29조(조정의 종결) ····· 34		
제7장 보 칙		
제30조(증명서의 발급) ····· 35		제10조(증명서의 발급) ····· 35
제31조(시정조치) ····· 37	제3조(시정조치의 권고 등) ····· 37	
제32조(보고와 검사) ····· 38		제1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등) ····· 39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 40		제12조(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개선명령) ··· 40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41		
제8장 벌 칙		
제35조(벌칙) ····· 41		
제36조(과태료) ····· 42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4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43	부 칙 43	부 칙 4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 2012. 2.22, 법률 제11357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제 정 2013. 2.20, 대통령령 제24386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제정 2013. 4.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육경비”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		제2조(적용대상 규모) ①「축산계열화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란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축종별로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돼지: 5천마리 이상 2. 육계: 33만마리 이상 3.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4. 산란계: 6만마리 이상 5. 오리: 15만마리 이상 6. 염소: 1천2백마리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를 계산하는 경우 1회 사육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간 회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돼지: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축종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육계: 5.5 3. 토종닭: 3 4. 산란계: 1 5. 오리: 5 6. 염소: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생산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이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3.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대상 기간 4. 대상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법과 절차 7. 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2.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소비량 및 수출량·수입량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계열화사업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계약 및 준수사항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사육경비의 지급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가산이자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5조(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하가축이 폐사한 경우 2. 출하가축이 훼손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니하다.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육경비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축이 폐사한 경우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 살처분·소각·매몰 등으로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출하할 수 없게 된 경우 3. 출하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이 훼손되거나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에 비하여 그 출하량이 감소한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8.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나.「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계열화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육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의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2.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품질을 속이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계약농가가 사육과정에서 사육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변경된 계약내용을 계약농가에 문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가축의 사육, 사육자재의 품질 또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를 평가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때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지정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		제7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연장 절차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이행에 관한 서류 3.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모범사업자의 신청·연장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및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 2.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금리 등 정책·제도 운영 시 우대 3.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2.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		제9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축산단체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는 축종별로 설치한다. ③ 계열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계열화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4명 2. 계열화사업자 대표 4명 3. 축산 관련 학계 또는 업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4명 이상 ⑤ 계열화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열화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분쟁조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등에 관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할) 조정위원회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4급 공무원 2.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임원 3.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단체의 임원 4.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와「민법」제770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열화협의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열화협의회에 회부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열화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30조(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3. 계약농가의 일반현황(주소, 전화번호, 가축사육 규모 및 사육시설 현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시정권고의 내용 3.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불복절차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육현황 2.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4.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개선명령)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지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할 때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불공정 거래행위의 내용 2. 조치기간 3.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제2호의 조치기간에 조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준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위원 또는 공무원 2. 계열화협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제8장 벌 칙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1357호, 2012.2.22>	부 칙 <제24386호, 2013.2.20>	부 칙 <제29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고시한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본다.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㊾부터 ㊻까지 생략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3항 후단,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6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부"로 한다. ㉚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49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0분의 1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의 9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100	200	400
2)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200	400	800
3)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500	1,000	2,000
4)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500	1,000	2,000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	30	60	120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120	240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300	600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300	60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 ····· 53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

1. 지정기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다만,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

나.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다.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세부 지정기준

세부 지정기준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 이 경우 1), 2), 4)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	○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	○
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	○

세부 지정기준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사.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
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	
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분쟁의 조정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	
파.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연장·변경] 신청·신고서 · 57
[별지 제2호서식]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 59
[별지 제3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신청서 ····· 60
[별지 제4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 62
[별지 제5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발급대장 ····· 63
[별지 제6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검사공무원증 ····· 6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 ] 지정 [ ] 연장 [ ] 변경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정·연장 신청내용	축 종	[ ] 돼지	[ ] 육계	[ ] 토종닭
		[ ] 산란계	[ ] 오리	[ ] 염소
	주사업내용			
변경 신고내용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 ] 지정, [ ] 연장, [ ]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지정·연장 신청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이행에 관한 서류 3.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 신고	1.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뒤쪽의 확인사항란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확인사항	○	×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	[ ]	[ ]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 이 경우 1), 2), 4)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 ]	[ ]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 ]	[ ]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	[ ]	[ ]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	[ ]	[ ]
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	[ ]	[ ]
사.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 ]	[ ]
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	[ ]	[ ]
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 ]
차. 법 제25조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	[ ]	[ ]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 분쟁의 조정 신청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있어도 ○란의 [ ]에 √표를 합니다.	[ ]	[ ]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	[ ]	[ ]
파.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	[ ]	[ ]

※ 확인사항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며,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세부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 ]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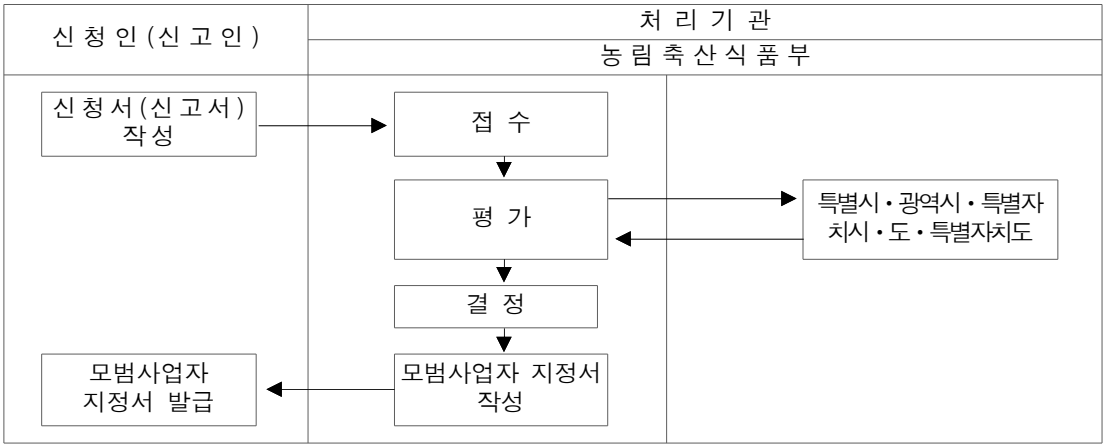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유효기간
	20 . . . ~ 20 . . .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법인명(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축 종:

주 소:

주 사업내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축 종	[ ] 돼지 [ ] 육계 [ ] 토종닭 [ ] 산란계 [ ] 오리 [ ] 염소
	주 사업내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증명 신청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3. 계약농가의 일반현황(주소, 전화번호, 가축사육 규모 및 사육시설 현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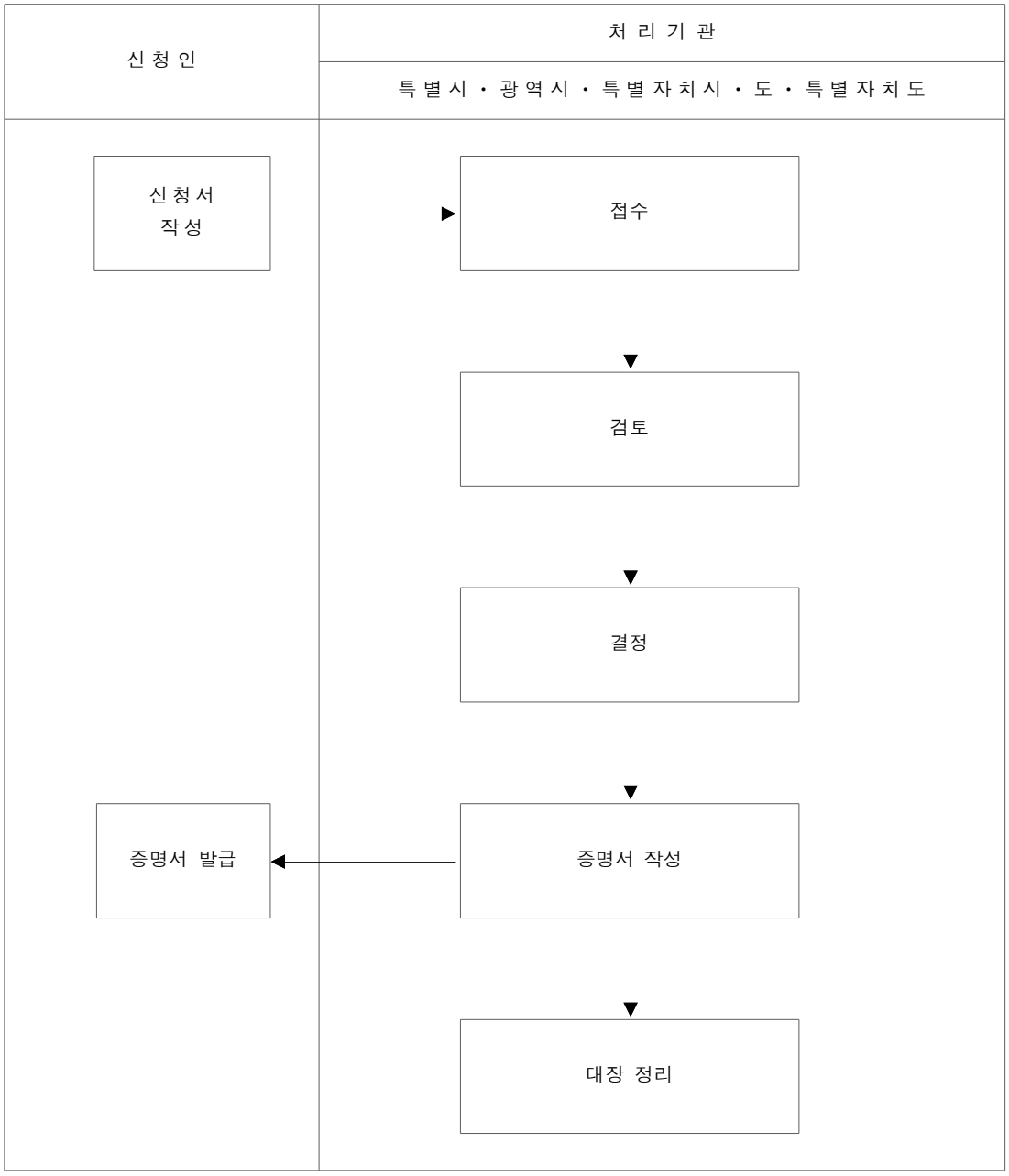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법인명(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축 종:

주 소:

주 사업내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연월일	발급 번호	법인명(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축 종	주 소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축산계열화사업
검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계열화사업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발간등록번호 : 11-1543000-000045-0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인쇄
2013년 5월 발행

발 행 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편 집 인 :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장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044)201-2338~9
http://www.mafra.go.kr

인 쇄 처 : 한라기획 ☎ (044)868-7334~5